

개인사업자용 대출 신청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5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대표자생년월일 (주민번호앞6자리)	
사업장 주소		영업기간(년 개월)	
전화번호		FAX	
자택주소		영업기간(년 개월)	
전화번호		FAX	

업체정보

업종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음식 <input type="checkbox"/> 도매 <input type="checkbox"/> 소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품목	
설립일	()실질영업년수()년	매출방법	<input type="checkbox"/> 주문판매 <input type="checkbox"/> 직판 <input type="checkbox"/> 공개입찰 <input type="checkbox"/> 임가공
상시 종업원	()명 중 가족()명	조세체납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부동산권리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input type="checkbox"/>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부동산)	※ 권리침해: 가압류, 가등기 등	

사업장

자가여부	<input type="checkbox"/> Y(소유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N(임차조건: 보증금 백만원, 월세 만원, 권리금 백만원)		
규모	대지()m ² 건물()m ²	입지	<input type="checkbox"/> 유통단지 <input type="checkbox"/> 벤처타운 <input type="checkbox"/> 주택가 <input type="checkbox"/> 도심상가

경영자정보

전문분야	<input type="checkbox"/> 관리 <input type="checkbox"/> 기술 <input type="checkbox"/> 영업 <input type="checkbox"/> 자금 <input type="checkbox"/> 無	동업계 경력	(년 개월)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Y()	주거방식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주거종류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연립/빌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유주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무정보

제무정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최근결산일:)	자산금액	백만원
년간 매출액	(부가세신고서 또는 과제표준증명원)	최근분기매출액	
총차입금	백만원(<input type="checkbox"/> 신용: 백만, <input type="checkbox"/> 담보: 백만)	소득 신고금액	(소득금액증명원상)

기업용 여신거래 약정서

본인:
주소:
담보제공자:
주소:

제 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 합니다.

여신과목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한도	대출기간	년
대출금액	금 _____ 원	대출(희망)일자			
대출용도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운전	대출만기일			
이자율 변경방식	<input type="checkbox"/> 6개월 단위 변동형(신규COFIX) <input type="checkbox"/> 3년 고정 후 6개월 단위 변동형(국고3년)	이자율 적용기한	접수일기준 2개월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적용이자율		접수일 (대출센터 기재)	20	
	COFIX() + ()% + ()% (대출전일 고시금리) (상품Spread) (최종가감금리)		국고3년금리 (접수일 적용)		%
	국고채 3년() + ()% + ()% (대출실행전 4주 평균) (상품Spread) (최종가감금리)		COFIX금리 (접수일 적용)		%

* 대출이자율은 상품금리와 고객별 우대 가산금리가 포함된 금리이며, 고객이 약정체결 이후 당사 우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건 대출기간 연장시 특약항목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본 약정에 따른 금리감면 가산은 계속하여 유효하기로 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가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출실행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연배상금율	2개월 이내 : 해당 원리금 상환액 * (적용이자율 + 연 %) * 비주거용 담보대출이면서 약정금액이 3천만원 초과인 경우 1개월 이내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2개월 초과 : 대출 잔액 * (적용이자율 + 연 %) * 비주거용 담보대출이면서 약정금액이 3천만원 초과인 경우 1개월 초과 단, 최대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은행 영업시간 마감後 ATM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시점의 적용이자율 + 가산금리방식으로 결정(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4항 적용) * 기한이익상실기한은 가계대출을 준용하여 2개월로 적용합니다.	
상환수수료	부과기간/율	대출일로부터 ()년간 ()% 부과	
	부과방식	상환원금 * 부과율 * 부과기간잔존율(부과기간잔존율 = 잔여부과일/총부과일)	
	일부면제유선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부과기간내 대출금액의 ()% 상환시까지의 상환수수료 면제)	
지급계좌	()은행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관계 _____
수납계좌	()은행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납입일자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납입방법	자동이체(R/T 수납 포함)

* 대출자와 이체계좌 예금주가 다를 경우: 상기 본인계좌로부터 ()의 대출원리금을 납입합니다. (인)

'국고채3년' 'COFIX' 접수시점 기준적용 관련 특약조항	1. 대출접수일 정의: 본인이 작성한 대출약정서와 제출한 제반서류가 대출센터로 도달하여, 도달된 약정서와 제출서류를 근거로 대출센터에서 전산상 대출 설계 내용을 확정된 날로 합니다.
	2. 휴일 약정서 작성 등 접수일의 지연: 약정서 작성 이후 전달소요시간 및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센터에 접수되기 까지 1~2일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특히 휴일에 약정서를 작성시 이후의 익영업일이 접수일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3. 접수일 기준 '국고채3년금리', 'COFIX금리'의 적용 기한 및 기간경과시 '국고채3년금리', 'COFIX금리'의 적용	① 접수 이후 본인의사 또는 심사과정상의 보안 필요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회사가 정하고 본인이 확인한 '적용기한'을 경과하여대출이 지급되는 경우는, 위에서 약정한 접수시점으로 '국고채3년', 'COFIX'금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② ①과 같이 적용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국고채3년금리'는 실제 대출이 지급되는 날이 포함된 주의 직전 4주 영업일수 '국고채3년금리' 평균금리가 적용되고, 'COFIX'금리는 대출전일 최종고시 되어있는 COFIX금리가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기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본인(대출자) 및 담보제공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상기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수령 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청취 및 이해했으며, 본 약정에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조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서가 병행 운영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신청 및 약정일 20 년 월 일
담보제공자 (인)
대출신청인(대출자) (인)

자필확인

제2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기표 통지

-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여신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회사는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 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여신한도 재평가 후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제도 이용 등

- ①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대출자에게 지연배상금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금의 일부, 전액상환 및 연체시에는 회사에 직접 납입합니다.
 2. 자동납입을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각종 예금 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은행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도록 합니다.
 3. 납입기일 현재 예금잔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는 즉시 회사에 납입하기로 합니다.
 4. 자동이체 신청을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는 납입일 30일전까지 자동납입변경 또는 해지신청을 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원리금 상환시 은행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납입할 경우 (R/T수납), 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 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③ 위②항에 의하여 회사가 대출자의 동의를 얻어 약속 인출일에 인출시도를 하였으나 잔고부족, 타행수표입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원리금 인출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 인출이 발생한 날까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신용불량거래처 등재, 타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약정한도 사용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나 중도상환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7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약정서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 ② 다만, 별도의 약정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상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보험계약 환급금 등)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9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 임대
 2. 이 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회사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회사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회사가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 예상표 등
 3. 매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 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 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사: 합계잔액시산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제11조 양도, 추심위탁

- ① 회사는 이 약정서에 의한 여신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 등에 양도 또는 유동화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의 여신채무가 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화 될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업무를 위탁하거나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 등에 양도 또는 유동화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2조 기타 특약사항

- 본인의 의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대출이 취소되는 경우 대출과정의 제반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약정체결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을 벗어나거나 신용관리정보 등록자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로부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대출진행과정에서 대출일자, 지급계좌 등 일부 내용을 고객님의과의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대출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위 약관과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본인은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에 본인이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성보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합니다	
① 본인은 대출실행일 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본인은 대출실행일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또한, 본인이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 계약은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에 해당이 없으며,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임]을 확인합니다.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오른쪽 빈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계약 체결전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대출모집인은 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대출관련하여 상담사로부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으셨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보험가입은 대출성사를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니며 대출과 연계하여 권유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상담사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회사가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상담사로부터 귀하의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및 변제계획 등 고려, 적합한 대출상품을 권유받으셨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상담사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유도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본 대출은 타인의 대출권유 등 대출사기와 무관하며 본인의 필요에 의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대출 계약 체결 전 대출상담사로부터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 청약철회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 분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인	(인)	대출상담사
-----	-----	-------

수입인지 첨부란

대출금	· 5천만원 이하 면제 · 1억원 이하 7만원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



추가약정서

기업자금 부동산담보대출 용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

본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제 약정 및 여신거래 기본약관 외에 다음의『추가약정』내용이 적용됨을 약정합니다.

제 1조 자금용도의 제한

본 대출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기업자금용도(업체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에 국한한다.
본 대출 유지기간 중 영위하는 업체의 휴·폐업이 확인되는 경우는 기업 자금용도가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조 기한이익의 상실

본 약정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와 더불어 추가약정상의 제 1조에서 제시한 자금용도용도에서 벗어남이 확인되는 경우, 본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확인일로부터 즉시 대출금의 변제를 촉구 받는다.

기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여신거래처는 여신 취급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기로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 외 유용 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회사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 여신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용도 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 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 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상기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고 이해하였음을 아래의 자필서명으로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채무자) 상호 : _____ (인)

대표자 : _____ (인)

주소 : _____

자필확인